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18호
----------	-------------

제출연월일 2007. 2.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그 근거법령이 변경되고, 초양도 주차장 조성공사의 준공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
- 나. 구 지방재정법 근거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 조항으로 변경 적용(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다. 만남의 광장 부지의 합필사항을 정리하고, 초양도주차장 조성 부지를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포함(안 별표 1)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06. 12. 19 ~ 2007. 1. 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 로 한다.

제6조제4항중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위탁 운영하거나”를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제3조 관련)

연번	위 치	규모(m <sup>2</sup> )	비고
1	사천시 대방동 765-3	12,608	
2	사천시 대방동 765-14	1,848	
3	사천시 대방동 765-15	3,933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	9,023	
5	사천시 늑도동 산3-4	62	
6	사천시 늑도동 산4-1	38	
7	사천시 늑도동 산4-2	71	
8	사천시 늑도동 산4-3	53	
9	사천시 늑도동 산5-4	62	
10	사천시 늑도동 산5-5	302	
11	사천시 늑도동 산5-6	221	
12	사천시 늑도동 471	94	
13	사천시 늑도동 472-2	116	
14	사천시 늑도동 472-3	155	
15	사천시 늑도동 473-2	49	
16	사천시 늑도동 474	301	
17	사천시 늑도동 475	664	
18	사천시 늑도동 476-2	368	
19	사천시 늑도동 476-4	192	
20	사천시 늑도동 476-5	256	
21	사천시 늑도동 477	380	
22	사천시 늑도동 477-1	198	
23	사천시 늑도동 477-2	274	
24	사천시 늑도동 478	251	
25	사천시 늑도동 478-1	105	
26	사천시 늑도동 479	103	
27	사천시 늑도동 479-1	64	
28	사천시 늑도동 479-2	163	
29	사천시 늑도동 605-1	125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u></p> <p>제6조(관리운영 등)</p> <p>①(생 략)</p> <p>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p> <p>③(생 략)</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용료)</p> <p>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납입고지서에 의해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생 략)</p> <p>③제2항에 의한 재산평정 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p> <p>①(생 략)</p> <p>1.~2.(생 략)</p> <p>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생 략)</p> <p>제12조(준용)</p> <p>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명 : <u>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6조(관리운영 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 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료)</p> <p>①-----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p> <p>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p> <p>①(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3.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2조(준용)</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별표 1]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연번	위 치	규모(m <sup>2</sup> )	비 고	연번	위 치	규모(m <sup>2</sup> )	비 고
1	사천시 대방동 765-3	12,608		1	사천시 대방동 765-3	12,608	
2	사천시 대방동 765-14	1,848		2	사천시 대방동 765-14	1,848	
3	사천시 대방동 765-15	3,933		3	사천시 대방동 765-15	3,933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0-2	6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	9,023	
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7	390		5	사천시 늑도동 산3-4	62	
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1	456		6	사천시 늑도동 산4-1	38	
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5	94		7	사천시 늑도동 산4-2	71	
8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3	2,136		8	사천시 늑도동 산4-3	53	
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3	172		9	사천시 늑도동 산5-4	62	
1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1	215		10	사천시 늑도동 산5-5	302	
1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0	63		11	사천시 늑도동 산5-6	221	
1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6	181		12	사천시 늑도동 471	94	
1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8-1	1,032		13	사천시 늑도동 472-2	116	
1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12	63		14	사천시 늑도동 472-3	155	
1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9	162		15	사천시 늑도동 473-2	49	
1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8	50		16	사천시 늑도동 474	301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1	41		17	사천시 늑도동 475	664	
18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0	61		18	사천시 늑도동 476-2	368	
1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	565		19	사천시 늑도동 476-4	192	
2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5-28	2,373		20	사천시 늑도동 476-5	256	



# 관 련 법 령 발 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 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횡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횡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참고 구 법령》

【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 [전부개정 2005.8.4 법률 제7663호]

제75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1>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개정 2000.10.20>)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0.20>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0>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9.29, 2000.10.20>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90.11.6,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1.6, 1993.9.23, 1994.12.23, 1996.6.29, 1998.7.16, 1999.4.30, 2000.10.20, 2002.11.29>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같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중·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삭제 <1999.4.30>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 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